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19년 10월 2주차)

2019. 10. 15. (화)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한 주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**(주간 워드 클라우드)**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주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
- **(주간 주요 상담사례)** 주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저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등록
2	캐릭터	이용
3	폰트	침해
4	이미지	유튜브
5	사진	제작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)의 한국저작권위원회 'KCC-은영체' 글꼴로 작성

<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>

○ (영상) 한글날을 맞아 도서관 내에서 한글과 관련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자 한다. 영화를 상영해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가?

- 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자 한다면 영화 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,[1]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하여야 한다.[2]

○ (캐릭터) 다음 카카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기업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?

- 캐릭터는 '미술저작물'에 해당하므로,[3] 저작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○ (폰트) 회사 홍보를 위해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이미지 파일이 있다. 이미지 파일 내에 폰트가 불법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,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?

-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'폰트 파일'이므로 이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자세한 사안은 '글꼴(폰트)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' 사례 9번을 참조할 수 있다.[4]

---

1) 저작권법 제29조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·방송)
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)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((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)
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.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
라.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
3) 저작권법 제4조(저작물의 예시 등)
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4. 회화·서예·조각·판화·공예·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
4) 글꼴(폰트)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(2019)는 http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publication/research-report/view.do?brdctsno=43622&pageIndex=1&portalcode04=&noticeYn=&nationcode=&brdno=34&etc1=&searchkeyword=&portalcode=04&brdclasscode=&searchText=&searchTarget=ALL&servicecode=06&brdctsstatecode= 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○ (이미지) 인터넷에 게시된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아 집에 있는 프린터기를 통하여 프린트 하였는데,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?

-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'사적이용을 위한 복제'[5] 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○ (사진) 시민이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기사화되었다. 해당 사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게재된 언론사에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?

- 저작권법상 '저작자' 는 "저작물을 창작한 자" 이므로,[6] 시민이 촬영한 사진의 경우 언론사가 아니라 시민이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된다.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언론사가 아닌 사진을 촬영한 시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그러나 시민과 언론사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양수인(저작재산권자)인 언론사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.

< 기타 주요 상담 >

○ (등록) 저작물 창작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가?

- 저작물 창작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. 그러나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.[7]

---

5) 저작권법 제30조(사적이용을 위한 복제)
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) 저작권법 제2조(정의)
2. "저작자"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
7) 저작권법제 제53조(저작권의 등록)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,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. **다만,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.**

○ **(이용) 공공누리 4유형[8]이 부착된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되는가?**

- 제4유형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 허락된 범위 외의 이용이므로 문제가 된다.

○ **(침해)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라고 알고 있다. 저작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?**

- 저작권 침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친고죄이나 “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” 인 경우 친고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.[9]

○ **(유튜브) 도서를 구입하여 읽어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자 한다. 도서 전체를 읽어주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?**

- 책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[10] 및 공연[11]에 해당 할 수 있고,

8)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는 다음과 같다.

유형	표시방법	이용허락 범위
1	OPEN 출처표시 /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• 출처 표시 •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•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
2	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/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• 출처 표시 •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•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가능
3	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/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• 출처 표시 •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 •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
4	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/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• 출처 표시 •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 가능 • 내용변경 등 2차적저작물작성 불가

9) 저작권법 제140조(고소)

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,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(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)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2.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,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

10) 저작권법 제2조(정의)

22. "복제"는 인쇄·사진촬영·복사·녹음·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,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.

11) 저작권법 제2조(정의)

3. "공연"은 저작물 또는 실연·음반·방송을 상연·연주·가창·구연·낭독·상영·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(전송을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.

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(전송)[12]에 해당하므로 저작(권)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○ (제작) 해외의 법령을 번역한 후 책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한다.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?

- 국내법상 '법률' 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,[13] 번역 후 제작 판매 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※ 공유마당(https://gongu.copyright.or.kr)의 한국저작권위원회 'kcc-도담도담체' 글꼴로 작성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19년 10월 2주차)저작물은 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2) 저작권법 제2조(정의)
7. "공중송신"은 저작물, 실연·음반·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(이하 "저작물등"이라 한다)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10. "전송(傳送)"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.

13) 저작권법 제7조(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
1. 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